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94
----------	-------

발의연월일 : 2026. 10. 14.

발 의 자 : 이수진 · 김남근 · 전진숙
이주희 · 백혜련 · 이광희
박지혜 · 이연희 · 남인순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성평등 실현은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였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범정부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위원회’ 등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 기능을 신설하며 성평등 관련 의제 논의·심의 기구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성평등 의제의 총괄적 조정·협업과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문화 확산, 성주류화 제도 지원 등 다양한 성평

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활성화 및 전국 확산 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성평등위원회는 심의·조정한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고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을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함(안 제11조제5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 다. 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함(안 제12조제2항, 제3항)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한 ‘성평등센터’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1893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5호)이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련 위원회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상정 이유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의3(중전의 제11조의2)의 제목 “(시·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시·도 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을 “(성평등실무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각각 “성평등위원회”로,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양성평등실무위원회”를 “성평등실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검토하고 범부처 협업·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과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중앙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제46조의4의 지역성평등센터의 사업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평등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조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성평등 문화 조성 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제46조의4에 따른 지역성평등센터에 대한 평가
4. 성평등 전문인력의 유관기관 연계·활용 지원
5.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앙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에서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성평등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성평등 문화 확산·조성 사업의 운영
2.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조치에 관한 자문 및 연구 등 지원

3. 지역 내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6조의3제3항 또는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6조의5에 따라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 제46조의4, 제46조의5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성평등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제46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는 제4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성평등센터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정 이유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의3(시·도 성평등위원회)

----- 성평등위원회 -----

----.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
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
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
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성평등
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
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
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 성평등위원회 -----

성평등위원회--성평등가족부장
관----- 성평등
실무위원회-----
-----.

② 성평등위원회-----
----- 검토하고 범부처 협
업·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하
여 전문위원회-----.

③ ----- 전문위원회 ---

-----.

제46조의3(중앙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
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총괄하고 제46조의4
의 지역성평등센터의 사업을 조
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
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

는 단체를 중앙성평등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조성
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조
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성평등 문화 조성 등 프로그
램 개발·보급 및 제46조의4
에 따른 지역성평등센터에 대
한 평가

4. 성평등 전문인력의 유관기관
연계·활용 지원

5.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지정한 중앙센터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에서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성평등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성평등 문화 확산·조성 사업의 운영

2.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조치에 관한 자문 및 연구 등 지원

3. 지역 내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망 구축·운영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 설>

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6조의3제3항 또는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

제49조(청문) <신 설> (생 략)	<u>는 시정명령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u> 제49조(청문) ① <u>성평등가족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6조의5에 따라 중앙센터 또 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	--